

일시 : 2017.11.08.(수) 16:00
장소 : 성북자원봉사실(성북구청 7층)

- 2017년 11월 (제45차) -
성북구 인권위원회 회의자료



성북구 인권위원회

목 차

1	논의사항	재개발 인권영향평가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및 쟁점 논의	1
2	보고사항	- 조례 및 규칙 제·개정안 - 인권영향평가 심의결과	2
3	보고사항	공공건축물 인권영향평가(50플러스센터)	54
4	보고사항	- 2017년 9월 - 성북구 인권위원회 간담회 개최결과	55
5	보고사항	복지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추진계획	56
6	보고사항	인권도시지방정부협의회 설립준비 보고	58
7	보고사항	인권전시관 ‘같이 숨쉬는 나비 프로젝트’ 결과보고	60

- 재개발 인권영향평가 시범실시 -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및 쟁점 논의

■ 용역개요

- 용역명: 재개발 인권영향평가 시범실시 연구용역
- 성북2구역, 삼선5구역
- 용역기간: 5월~12월(계약일로부터 7개월)
- 수행기관: 한국 도시연구소(대표자: 최병두)
- 계약금액: 금93,080,000원(금구천삼백팔만원)

■ 일 시 : 2017. 11. 8(수) 16:00 ~ 17:00

■ 장 소 : 성북구청 7층 자원봉사실

■ 참석자

- 구 청: 주거정비과장, 감사담당관, 인권센터장
- 외부전문가: 성북구 인권위원회 위원
- 용역수행기관: 최은영 박사, 이강훈 변호사, 이원호 활동가
(이상 재개발인권영향평가 연구용역 연구자)

■ 주요내용

- 그 동안의 추진경과 및 분석결과 보고
- 향후 연구수행계획 보고

보고사항 1

- 조례 및 규칙 제·개정안 - 인 권 영 향 평 가 심 의 결 과

① 성북구 구세 기본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안

1. 제안이유

지방세의 징수규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제정하면서 「지방세기본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4474호, 2016. 12. 27. 공포, 2017. 3. 28. 시행)됨에 따라, 이 규칙 중 구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새로 제정하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에 이관하는 한편, 이 규칙은 「지방세기본법」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기본 조례」의 체계에 맞도록 전부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규칙의 목적, 정의, 법령 등과의 관계, 각종 대장 등의 작성·비치, 서류의 송달 등을 규정함 (안 제1조 ~ 안 제5조)
- 나. 부과 취소 및 변경, 시세환급금의 처리·지급대상자·충당, 납세담보의 범위 등을 규정함 (안 제6조 ~ 안 제10조)
- 다. 각종 통지의 전산처리 등을 규정함 (안 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2조, 5조

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인권영향평가 기초자료 작성서식 (담당부서)

- 조례·규칙 제·개정용

※관리번호	인권영향평가 기초자료		
-			
조례·규칙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기본조례 시행규칙		
관련규정 (고시, 훈령, 규정, 지침, 협약 등)	지방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등		
입법일정 (예정)	관계부서 협 의	대상부서	감사담당관
		협의기간	
	입법예고	2017. 11. 2.부터 2017. 11. 22.까지(20일간) 매체 : 공보(구보), 기타(홈페이지)	
	조례·규칙 심 의 회	2017년 12월(예정)	
	의회상정		
첨부자료	필수자료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기본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기타자료		
※ 검 토 결 과			

작 성 자	부서명	직 급	성 명	전화번호
	세무1과	6급	정현미	2241-4052

「※」 란은 기재하지 말 것

인권영향 점검표(1) 조례·규칙 제·개정용

※ 해당사항에 ○로 표시해 주십시오.

구 분	질 문	응 답		비 고
권리 침해	관련조항에 권리침해 요소가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	
	사용된 용어에 인권침해적 요소가 있습니까? (인권침해적 용어의 사용, 알기 쉬운 법률용어 사용 등 점검)	① 예		
		② 아니오	○	
주민 참여	제개정의 과정에서 주민의 참여가 보장되어 있습니까?	① 예	○	입법예고 의견청취
		② 아니오		
구제 수단	재·개정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권리침해 요소를 해소할 수 있는 수단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	
기대 효과	재·개정으로 주민들의 인권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	

작성요령

가. 제·개정되는 조례·규칙의 시행 전 고려사항, 시행효과 등을 판단하여 5개의 인권영향평가 세부 평가항목 응답란의 ‘예’ 또는 ‘아니오’에 “○”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5개의 인권영향평가 세부 평가항목에 ‘예’로 체크한 경우 해당내용을 비고란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그 외, 보완설명이 필요한 경우 비고란에 기재 바라며, 입증자료 등이 있을 시 자료명 기재 바랍니다.

인권영향평가(조례 및 규칙 제·개정용)점검표

(2017. 11. 6.)

조례 및 규칙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기본조례 시행규칙
검 토 항 목	
<p>1. 해당조례 및 규칙의 제·개정으로 인하여, 원치 않는 피해를 보거나 인권 및 권리가 침해되는 주민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가?</p> <p><input checked="" type="checkbox"/> 인권침해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됨</p> <p><input type="checkbox"/> 인권침해 가능성이 일부 있으므로 세심한 관리가 요망된다고 판단됨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부분은 다음과 같음: (필요시 별지사용)</p>	
<p>2. 해당조례 및 규칙의 제·개정내용에 대해 인권담당부서에서 주민들의 인권침해 방지 및 인권향상을 위하여 별도로 요청할 내용이 있는가?</p> <p><input checked="" type="checkbox"/> 별도 요청사항 없음</p>	

② 성북구 구세 징수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1. 제안이유

지방세의 징수규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제정개정(법률 제14474호, 2016. 12. 27. 공포, 2017. 3. 28. 시행)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에 규정된 구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규정을 분리하여 「지방세징수법」 및 「서울특별시 구세 징수 조례」에 체계에 맞도록 이 규칙을 새로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규칙의 목적, 정의, 법령 등과의 관계, 각종 대장의 작성·비치 등을 규정함 (안 제1조 ~ 안 제4조)
- 나. 구세의 보통징수 방법 및 신고납부 방법에 대한 처리절차를 규정함 (안 제5조, 안 제6조)
- 다. 납세고지서의 작성, 소인, 납기마감 처리, 체납액정리표 관리를 규정함 (안 제7조 ~ 안 제10조)
- 라. 세입징수 결과제출, 세입마감, 체납액의 이월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11조 ~ 안 제13조)
- 마. 결손처분의 결정·취소·사후관리를 규정함 (안 제14조 ~ 안 제16조)
- 바.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절차와 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를 규정

함 (안 제17조, 안 제18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1) 지방세징수법 제1조, 3조, 25조, 105조

2) 지방회계법 시행령

인권영향평가 기초자료 작성서식 (담당부서)

- 조례·규칙 제·개정용

※관리번호	인권영향평가 기초자료		
-			
조례·규칙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징수조례 시행규칙		
관련규정 (고시, 훈령, 규정, 지침, 협약 등)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등		
입법일정 (예정)	관계부서 협 의	대상부서	감사담당관
		협 의기간	
	입법예고	2017. 11. 2.부터 2017. 11. 22.까지(20일간) 매체 : 공보(구보), 기타(홈페이지)	
	조례·규칙 심 의 회	2017년 12월(예정)	
	의회상정		
첨부자료	필수자료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징수조례 시행규칙 안	
	기타자료		
※ 검 토 결 과			

작 성 자	부서명	직 급	성 명	전화번호
	세무1과	6급	정현미	2241-4052

「※」 란은 기재하지 말 것

인권영향 점검표(1) 조례·규칙 제·개정용

※ 해당사항에 ○로 표시해 주십시오.

구 분	질 문	응 답		비 고
권리 침해	관련조항에 권리침해 요소가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	
	사용된 용어에 인권침해적 요소가 있습니까? (인권침해적 용어의 사용, 알기 쉬운 법률용어 사용 등 점검)	① 예		
		② 아니오	○	
주민 참여	제개정의 과정에서 주민의 참여가 보장되어 있습니까?	① 예	○	입법예고 의견청취
		② 아니오		
구제 수단	제·개정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권리침해 요소를 해소할 수 있는 수단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	
기대 효과	제·개정으로 주민들의 인권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	

작성요령

가. 제·개정되는 조례·규칙의 시행 전 고려사항, 시행효과 등을 판단하여 5개의 인권영향평가 세부 평가항목 응답란의 ‘예’ 또는 ‘아니오’에 “○”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5개의 인권영향평가 세부 평가항목에 ‘예’로 체크한 경우 해당내용을 비고란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그 외, 보완설명이 필요한 경우 비고란에 기재 바라며, 입증자료 등이 있을 시 자료명 기재 바랍니다.

인권영향평가(조례 및 규칙 제·개정용)점검표

(2017. 11. 6.)

조례 및 규칙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징수조례 시행규칙
검 토 항 목	
<p>1. 해당조례 및 규칙의 제·개정으로 인하여, 원치 않는 피해를 보거나 인권 및 권리가 침해되는 주민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가?</p> <p><input checked="" type="checkbox"/> 인권침해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됨</p> <p><input type="checkbox"/> 인권침해 가능성이 일부 있으므로 세심한 관리가 요망된다고 판단됨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부분은 다음과 같음: (필요시 별지사용)</p>	
<p>2. 해당조례 및 규칙의 제·개정내용에 대해 인권담당부서에서 주민들의 인권침해 방지 및 인권향상을 위하여 별도로 요청할 내용이 있는가?</p> <p><input checked="" type="checkbox"/> 별도 요청사항 없음</p>	

③ 성북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 제안이유

행정안전부 및 법제처의 자치법규 정비과제 이행 요청사항과 상위법령인 「도로명주소법」 개정의 일부 내용을 반영하여 해당규정을 개선·보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상위법 위임 규정에 행정안전부 부령 “도로명주소대장규칙” 및 “도로명주소 안내시설규칙”을 추가. [안 제2조]
- 나. 도로명주소법시행규칙의 서식번호 변경에 따라 “건물번호판 교부대장” 서식번호를 제8호⇒제14호로 변경. [안 제8조제1항]
- 다. 건물번호판제작비용 규정의 “구청장 규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내용과 중복된 제작비용 산정” 내용을 삭제. [안 제8호제2항]
- 라. 관련부서의 도로명주소 관련 자료의 제출은 행정내부의 업무분장 또는 지침에 관한 사항으로 삭제. [안 제12조]
- 마.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위탁관리업체 선정 기준의 불분명한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 [안 제16조제1항]
- 바. 상위법령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규정에 맞게 광고사업 계약 체결 기한 정비 10일⇒20일 이내로 변경. [안 제20조제1항]
- 사. 광고사업 계약체결 관련 제작 “계획서”를 “시안”으로, 의무사항인 “구청장과 협의·확정 하여야 한다”를 권고사항인 “협의하여 확정할 수 있다”로 변경.

[안 제20조제3항]

아. 「도로명주소법」 제22조1항의 도로명주소 “사용”촉진과 같이 조례상의 도로명주소의 “생활화”라는 규정을 도로명주소 “사용”촉진으로 변경.

[안 제23조(제목포함)제1항 및 제3,4호]

자. 도로명주소위원회의 구성 최소한의 위원수를 행정안전부 권고에 따라 지역주민 참여율을 높이기 위하여 “5명”이상에서 “8명”이상으로하고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람중”을 “사람 중”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관계공무원”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및”을 “또는”으로 한다.

[안 제24조제1항]

차. 위원의 임기 및 해촉에서 위원이 “사망”할 경우 당연 해촉사유에 해당 하여 삭제. [안 제25조제2항제1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로명주소법」 및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인권영향평가 기초자료 작성서식 (담당부서)

- 조례·규칙 제·개정용

※관리번호	인권영향평가 기초자료		
2017 - 22			
조례·규칙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관련규정 (고시, 훈령, 규정, 지침, 협약 등)	도로명주소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입법일정 (예정)	관계부서 협 의	대상부서	감사담당관
		협의기간	
	입법예고	2017. 9. 25.부터 2017.10.15.까지(20일간) 매체 : 공보(구보), 기타(홈페이지)	
	조례·규칙 심 의 회	2017년 11월(예정)	
	의회상정	2017년 11월(예정)	
첨부자료	필수자료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기타자료		
※ 검 토 결 과			

작 성 자	부서명	직 급	성 명	전화번호
	지적과	7급	박정연	2241-4653

「※」 란은 기재하지 말 것

인권영향 점검표(1) 조례·규칙 제·개정용

※ 해당사항에 ○로 표시해 주십시오.

구 분	질 문	응 답		비 고
권리 침해	관련조항에 권리침해 요소가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	
	사용된 용어에 인권침해적 요소가 있습니까? (인권침해적 용어의 사용, 알기 쉬운 법률용어 사용 등 점검)	① 예		
		② 아니오	○	
주민 참여	제개정의 과정에서 주민의 참여가 보장되어 있습니까?	① 예	○	입법예고 의견청취
		② 아니오		
구제 수단	제·개정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권리침해 요소를 해소할 수 있는 수단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	
기대 효과	제·개정으로 주민들의 인권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	

작성요령

가. 제·개정되는 조례·규칙의 시행 전 고려사항, 시행효과 등을 판단하여 5개의 인권영향평가 세부 평가항목 응답란의 ‘예’ 또는 ‘아니오’에 “○”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5개의 인권영향평가 세부 평가항목에 ‘예’로 체크한 경우 해당내용을 비고란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그 외, 보완설명이 필요한 경우 비고란에 기재 바라며, 입증자료 등이 있을 시 자료명 기재 바랍니다.

※관리번호	인권영향평가(공통)점검표
2017-22	
조례·규칙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부 서 점검표 작성	1. 해당업무 담당자는 주어진 인권영향점검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였는가?	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2. 해당업무 담당자는 해당업무의 인권영향평가표를 검수하기 위해 필요한 근거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였는가?	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권 리 침해	3. 해당업무 담당자는 정책운영과정에서 혹시 발생할 수 있는 권리침해내용에 대해 인지하고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였는가?	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4. 해당업무 담당자는 사용하는 용어에 인권침해적 요소가 있는지 여부를 엄밀히 점검하여, 인권 침해적 요소가 없도록 조치하였는가?	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주 민 참여	5. 해당업무 담당자는 정책관련정보가 주민에게 충분히 전달되도록 정보공개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였는가?	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6. 해당업무 담당자는 정책수립과정에 주민들의 참여가 충분히 보장되도록 적절한 조치를 수행하였는가?	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구 제 수 단	7. 해당업무 담당자는 해당정책으로 인해 주민들의 권리 침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적절한 조치를 수행하였는가?	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주 민 참여	8. 해당정책은 주민들의 인권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는가?	상당한 효과기대 <input type="checkbox"/> 약간의 효과기대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9. 해당정책 수행 시 주민들의 인권침해 가능성이 있는가?	인권침해요소가 있으므로주의필요 <input type="checkbox"/> 인권침해요소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인권영향평가(조례 및 규칙 제·개정용)점검표

(2017. 9. 29.)

조례 및 규칙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검 토 항 목	
<p>1. 해당조례 및 규칙의 제·개정으로 인하여, 원치 않는 피해를 보거나 인권 및 권리가 침해되는 주민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가?</p> <p><input checked="" type="checkbox"/> 인권침해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됨</p> <p><input type="checkbox"/> 인권침해 가능성이 일부 있으므로 세심한 관리가 요망된다고 판단됨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부분은 다음과 같음: (필요시 별지사용)</p>	
<p>2. 해당조례 및 규칙의 제·개정내용에 대해 인권담당부서에서 주민들의 인권침해 방지 및 인권향상을 위하여 별도로 요청할 내용이 있는가?</p> <p><input checked="" type="checkbox"/> 별도 요청사항 없음</p>	

4 성북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 제안이유

성북 청소년 문화의집 신축 및 장위동 청소년공부방 신규 개관, 성북동 청소년공부방 이전 등 변경사항이 발생함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시설의 명칭, 기능 및 위치를 변경하고, 청소년시설 사용료 항목 중 일부를 변경하고자 우리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별표 제1호 ‘성북구 청소년시설’ 명칭, 기능 및 위치 변경(안 제4조 관련)
- 나. 별지 제2호 ‘성북구 청소년시설 사용료 상한’ 일부 항목 변경(안 제8조 관련)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

인권영향평가 기초자료 작성서식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 조례·규칙 제·개정용

※관리번호	인권영향평가 기초자료			
2017 - 23				
조례·규칙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관련규정 (고시, 훈령, 규정, 지침, 협약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기본법 · 청소년활동진흥법 			
입법일정 (예정)	관계부서 협 의	대상부서		
		협의기간		
	입법예고	2017. 9. 21.부터 2017. 10. 11.까지(20일간 예정) 매체 : 공보(구보), 기타(구 홈페이지)		
	조례·규칙 심 의 회	2017. 11월		
	의회상정			
첨부자료	필수자료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기타자료			
※ 검 토 결 과				

작 성 자	부서명	직 급	성 명	전화번호
	교육아동청소년담 당관	행정8급	김정호	02-2241-2412

「※」 란은 기재하지 말 것

인권영향 점검표(1) 조례·규칙 제·개정용

※ 해당사항에 ○로 표시해 주십시오.

구 분	질 문	응 답		비 고
권리 침해	관련조항에 권리침해 요소가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	
	사용된 용어에 인권침해적 요소가 있습니까? (인권침해적 용어의 사용, 알기 쉬운 법률용어 사용 등 점검)	① 예		
		② 아니오	○	
주민 참여	제·개정의 과정에서 주민의 참여가 보장되어 있습니까?	① 예	○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제출
		② 아니오		
구제 수단	제·개정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권리침해 요소를 해소할 수 있는 수단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	
기대 효과	제·개정으로 주민들의 인권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습니까?	① 예	○	청소년 문화 수요 충족
		② 아니오		

작성요령

가. 제·개정되는 조례·규칙의 시행 전 고려사항, 시행효과 등을 판단하여 5개의 인권영향평가 세부 평가항목 응답란의 ‘예’ 또는 ‘아니오’에 “○”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5개의 인권영향평가 세부 평가항목에 ‘예’로 체크한 경우 해당내용을 비고란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그 외, 보완설명이 필요한 경우 비고란에 기재 바라며, 입증자료 등이 있을 시 자료명 기재 바랍니다.

※관리번호	인권영향평가(공통)점검표
2017-23	
조례·규칙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부 서 점검표 작성	1. 해당업무 담당자는 주어진 인권영향점검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였는가?	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2. 해당업무 담당자는 해당업무의 인권영향평가표를 검수하기 위해 필요한 근거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였는가?	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권 리 침해	3. 해당업무 담당자는 정책운영과정에서 혹시 발생할 수 있는 권리침해내용에 대해 인지하고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였는가?	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4. 해당업무 담당자는 사용하는 용어에 인권침해적 요소가 있는지 여부를 엄밀히 점검하여, 인권 침해적 요소가 없도록 조치하였는가?	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주 민 참여	5. 해당업무 담당자는 정책관련정보가 주민에게 충분히 전달되도록 정보공개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였는가?	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6. 해당업무 담당자는 정책수립과정에 주민들의 참여가 충분히 보장되도록 적절한 조치를 수행하였는가?	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구 제 수 단	7. 해당업무 담당자는 해당정책으로 인해 주민들의 권리 침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적절한 조치를 수행하였는가?	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주 민 참여	8. 해당정책은 주민들의 인권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는가?	상당한 효과기대 <input type="checkbox"/> 약간의 효과기대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없음 <input type="checkbox"/>
	9. 해당정책 수행 시 주민들의 인권침해 가능성이 있는가?	인권침해요소가 있으므로주의필요 <input type="checkbox"/> 인권침해요소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인권영향평가(조례 및 규칙 제·개정용)점검표

(2017. 9. 29.)

조례 및 규칙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검 토 항 목	
<p>1. 해당조례 및 규칙의 제·개정으로 인하여, 원치 않는 피해를 보거나 인권 및 권리가 침해되는 주민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가?</p> <p><input checked="" type="checkbox"/> 인권침해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됨</p> <p><input type="checkbox"/> 인권침해 가능성이 일부 있으므로 세심한 관리가 요망된다고 판단됨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부분은 다음과 같음: (필요시 별지사용)</p>	
<p>2. 해당조례 및 규칙의 제·개정내용에 대해 인권담당부서에서 주민들의 인권침해 방지 및 인권향상을 위하여 별도로 요청할 내용이 있는가?</p> <p><input checked="" type="checkbox"/> 별도 요청사항 없음</p>	

㉔ 성북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1. 제안이유

조례의 별표 시설목록에 돌곳이 생활예술문화센터를 추가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성북구 문화예술시설의 종류 및 명칭란에 신규 개관 문화예술시설 명칭 추가
(안 별표1)

시 설 명	기 능	위 치
성북예술 창작센터	전시관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로 23 (성북동1가 74-1)
미아리고개 예술극장	공연장, 세미나, 영화상영 등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 177 (돈암동 51-49외)
코아루센타시아 내 문화시설	전시장, 문화관, 체험관 등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20나길 47 코아루센타시아 내 북층 (129호, 226호) (동선동1가 121-6)
돌곳이 생활예술문화센터	전시장, 문화관, 체험관 등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랑로32길 100-1(석관동 261-125)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제1항 제3호

인권영향평가 기초자료 작성서식 (담당부서)

- 조례·규칙 제·개정용

※관리번호	인권영향평가 기초자료			
2017 - 24				
조례·규칙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관련규정 (고시, 훈령, 규정, 지침, 협약 등)	·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입법일정 (예정)	관계부서 협 의	대상부서		
		협의기간		
	입법예고	2017. 9. 21.부터 2017. 10. 11.까지(20일간 예정) 매체 : 공보(구보), 기타(구 홈페이지)		
	조례·규칙 심 의 회	2017. 11월		
	의회상정			
첨부자료	필수자료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기타자료			
※ 검 토 결 과				

작 성 자	부서명	직 급	성 명	전화번호
	문화체육과	행정6급	김문경	02-2241-2605

「※」 란은 기재하지 말 것

인권영향 점검표(1) 조례·규칙 제·개정용

※ 해당사항에 ○로 표시해 주십시오.

구 분	질 문	응 답		비 고
권리 침해	관련조항에 권리침해 요소가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	
	사용된 용어에 인권침해적 요소가 있습니까? (인권침해적 용어의 사용, 알기 쉬운 법률용어 사용 등 점검)	① 예		
		② 아니오	○	
주민 참여	제·개정의 과정에서 주민의 참여가 보장되어 있습니까?	① 예	○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제출
		② 아니오		
구제 수단	제·개정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권리침해 요소를 해소할 수 있는 수단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	
기대 효과	제·개정으로 주민들의 인권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습니까?	① 예	○	주민 문화 수요 충족
		② 아니오		

작성요령

가. 제·개정되는 조례·규칙의 시행 전 고려사항, 시행효과 등을 판단하여 5개의 인권영향평가 세부 평가항목 응답란의 ‘예’ 또는 ‘아니오’에 “○”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5개의 인권영향평가 세부 평가항목에 ‘예’로 체크한 경우 해당내용을 비고란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그 외, 보완설명이 필요한 경우 비고란에 기재 바라며, 입증자료 등이 있을 시 자료명 기재 바랍니다.

※관리번호	인권영향평가(공통)점검표
2017-24	
조례·규칙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부 서 점검표 작성	1. 해당업무 담당자는 주어진 인권영향점검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였는가?	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2. 해당업무 담당자는 해당업무의 인권영향평가표를 검수하기 위해 필요한 근거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였는가?	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권 리 침해	3. 해당업무 담당자는 정책운영과정에서 혹시 발생할 수 있는 권리침해내용에 대해 인지하고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였는가?	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4. 해당업무 담당자는 사용하는 용어에 인권침해적 요소가 있는지 여부를 엄밀히 점검하여, 인권 침해적 요소가 없도록 조치하였는가?	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주 민 참여	5. 해당업무 담당자는 정책관련정보가 주민에게 충분히 전달되도록 정보공개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였는가?	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6. 해당업무 담당자는 정책수립과정에 주민들의 참여가 충분히 보장되도록 적절한 조치를 수행하였는가?	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구 제 수 단	7. 해당업무 담당자는 해당정책으로 인해 주민들의 권리 침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적절한 조치를 수행하였는가?	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주 민 참여	8. 해당정책은 주민들의 인권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는가?	상당한 효과기대 <input type="checkbox"/> 약간의 효과기대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없음 <input type="checkbox"/>
	9. 해당정책 수행 시 주민들의 인권침해 가능성이 있는가?	인권침해요소가 있으므로 주의필요 <input type="checkbox"/> 인권침해요소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인권영향평가(조례 및 규칙 제·개정용)점검표

(2017. 9. 29)

조례 및 규칙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검 토 항 목	
<p>1. 해당조례 및 규칙의 제·개정으로 인하여, 원치 않는 피해를 보거나 인권 및 권리가 침해되는 주민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가?</p> <p><input checked="" type="checkbox"/> 인권침해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됨</p> <p><input type="checkbox"/> 인권침해 가능성이 일부 있으므로 세심한 관리가 요망된다고 판단됨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부분은 다음과 같음: (필요시 별지사용)</p>	
<p>2. 해당조례 및 규칙의 제·개정내용에 대해 인권담당부서에서 주민들의 인권침해 방지 및 인권향상을 위하여 별도로 요청할 내용이 있는가?</p> <p><input checked="" type="checkbox"/> 별도 요청사항 없음</p>	

⑥ 성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

1. 제안이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등 상위법 법령 개정 사항과 기존 성북구 복무지침 사항 및 일·가정의 양립, 가족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 등 변화된 행정환경을 복무 업무에 반영하고자 우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임신공무원 장거리 출장 제한, 임산부공무원 야간·휴일근무 제한

(안 제8조제4항, 제15조제3항)

나. 경력직공무원의 재직기간이 2년 미만이고 유사경력이 3월 이상인 경우 연

가일수 2일 가산 (안 제18조, 제18조의2)

다. 둘째 자녀부터 휴직기간 전부를 재직기간에 산입 (안 제19조제1항제1호)

라. 연가 일수 7일 초과 제한규정 삭제 (안 제20조제2항)

마. 임신·출산 또는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은 연가일수 공제에서 제외

(안 제21조제2항)

바. 경조사 휴가 의무적 승인, 두명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여성공무원에 대한

보호(출산휴가 120일)와 임신초기에 필요한 경우에도 출산휴가 사용, 생후 1년 미만 유아 가진 공무원(남성 포함) 1시간 육아시간 부여

(안 제24조 제1항, 제2항, 제4항)

사. 자녀입영휴가 1일, 고등학교 이하 자녀돌봄휴가 2일(세자녀 이상 3일) (안

제24조 제11항, 제12항)

아.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사망시와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사망시 경조사 휴가 2일에서 3일로 확대 (안 별표 3)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지방공무원법 제59조(위임규정)

인권영향평가 기초자료 (행정지원과)

- 조례·규칙 제·개정용

※관리번호	인권영향평가 기초자료		
2017 - 25			
조례·규칙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관련규정 (고시, 훈령, 규정, 지침, 협약 등)	· 지방공무원법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입법일정 (예정)	관계부서 협 의	대상부서	
		협의기간	
	입법예고	2017. 9. 21. ~ 2017. 10. 11.(20일간) 매체 : 공보(구보), 기타(구 홈페이지)	
	조례·규칙 심 의 회	2017. 11월	
	의회상정	2017. 11. 20. ~12. 14.	
첨부자료	필수자료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타자료		
※ 검 토 결 과			

작 성 자	부서명	직 급	성 명	전화번호
	행정지원과	행정7급	정성원	2241-4314

「※」 란은 기재하지 말 것

인권영향 점검표(1) 조례·규칙 제·개정용

※ 해당사항에 ○로 표시해 주십시오.

구 분	질 문	응 답		비 고
권리 침해	관련조항에 권리침해 요소가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	
	사용된 용어에 인권침해적 요소가 있습니까? (인권침해적 용어의 사용, 알기 쉬운 법률용어 사용 등 점검)	① 예		
		② 아니오	○	
주민 참여	제개정의 과정에서 주민의 참여가 보장되어 있습니까?	① 예	○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제출
		② 아니오		
구제 수단	재·개정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권리침해 요소를 해소할 수 있는 수단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	
기대 효과	재·개정으로 주민들의 인권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	

작성요령

가. 제·개정되는 조례·규칙의 시행 전 고려사항, 시행효과 등을 판단하여 5개의 인권영향평가 세부 평가항목 응답란의 ‘예’ 또는 ‘아니오’에 “○”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5개의 인권영향평가 세부 평가항목에 ‘예’로 체크한 경우 해당내용을 비고란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그 외, 보완설명이 필요한 경우 비고란에 기재 바라며, 입증자료 등이 있을 시 자료명 기재 바랍니다

※관리번호	인권영향평가(공통)점검표
2017-25	
조례·규칙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부 서 점검표 작성	1. 해당업무 담당자는 주어진 인권영향점검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였는가?	예☑ 아니오□
	2. 해당업무 담당자는 해당업무의 인권영향평가표를 검수하기 위해 필요한 근거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였는가?	예☑ 아니오□
권 리 침해	3. 해당업무 담당자는 정책운영과정에서 혹시 발생할 수 있는 권리침해내용에 대해 인지하고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였는가?	예☑ 아니오□
	4. 해당업무 담당자는 사용하는 용어에 인권침해적 요소가 있는지 여부를 엄밀히 점검하여, 인권 침해적 요소가 없도록 조치하였는가?	예☑ 아니오□
주 민 참여	5. 해당업무 담당자는 정책관련정보가 주민에게 충분히 전달되도록 정보공개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였는가?	예☑ 아니오□
	6. 해당업무 담당자는 정책수립과정에 주민들의 참여가 충분히 보장되도록 적절한 조치를 수행하였는가?	예☑ 아니오□
구 제 수 단	7. 해당업무 담당자는 해당정책으로 인해 주민들의 권리 침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적절한 조치를 수행하였는가?	예☑ 아니오□
주 민 참여	8. 해당정책은 주민들의 인권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는가?	상당한 효과기대□ 약간의 효과기대□ 해당없음☑
	9. 해당정책 수행 시 주민들의 인권침해 가능성이 있는가?	인권침해요소가 있으므로주의필요□ 인권침해요소 없음☑

인권영향평가(조례 및 규칙 제·개정용)점검표

(2017. 10. 10)

조례 및 규칙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검 토 항 목	
<p>1. 해당조례 및 규칙의 제·개정으로 인하여, 원치 않는 피해를 보거나 인권 및 권리가 침해되는 주민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가?</p> <p><input checked="" type="checkbox"/> 인권침해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됨</p> <p><input type="checkbox"/> 인권침해 가능성이 일부 있으므로 세심한 관리가 요망된다고 판단됨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부분은 다음과 같음: (필요시 별지사용)</p>	
<p>2. 해당조례 및 규칙의 제·개정내용에 대해 인권담당부서에서 주민들의 인권침해 방지 및 인권향상을 위하여 별도로 요청할 내용이 있는가?</p> <p><input checked="" type="checkbox"/> 별도 요청사항 없음</p>	

7 성북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1. 제안이유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 정의 (안 제1조 ~ 안 제2조)

나. 제설·제빙 책임 순위 (안 제3조)

다. 제설·제빙 범위 및 시기 (안 제4조~안 제5조)

라. 제설·제빙 방법 및 도구 관리 (안 제6조~ 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

인권영향평가 기초자료 작성서식 (담당부서)

- 조례·규칙 제·개정용

※관리번호	인권영향평가 기초자료			
2017 - 26				
조례·규칙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관련규정 (고시, 훈령, 규정, 지침, 협약 등)	·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입법일정 (예정)	관계부서 협 의	대상부서		
		협의기간		
	입법예고	2017. 9. 28.부터 2017. 10. 18.까지(20일간 예정) 매체 : 공보(구보), 기타(구 홈페이지)		
	조례·규칙 심 의 회	2017. 11월		
	의회상정			
첨부자료	필수자료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기타자료			
※ 검 토 결 과				

작 성 자	부서명	직 급	성 명	전화번호
	도로과	시설7급	김용필	02-2241-3542

「※」 란은 기재하지 말 것

인권영향 점검표(1) 조례·규칙 제·개정용

※ 해당사항에 ○로 표시해 주십시오.

구 분	질 문	응 답		비 고
권리 침해	관련조항에 권리침해 요소가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	
	사용된 용어에 인권침해적 요소가 있습니까? (인권침해적 용어의 사용, 알기 쉬운 법률용어 사용 등 점검)	① 예		
		② 아니오	○	
주민 참여	제·개정의 과정에서 주민의 참여가 보장되어 있습니까?	① 예	○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제출
		② 아니오		
구제 수단	재·개정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권리침해 요소를 해소할 수 있는 수단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	
기대 효과	재·개정으로 주민들의 인권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습니까?	① 예	○	주민 문화 수요 충족
		② 아니오		

작성요령

가. 제·개정되는 조례·규칙의 시행 전 고려사항, 시행효과 등을 판단하여 5개의 인권영향평가 세부 평가항목 응답란의 ‘예’ 또는 ‘아니오’에 “○”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5개의 인권영향평가 세부 평가항목에 ‘예’로 체크한 경우 해당내용을 비고란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그 외, 보완설명이 필요한 경우 비고란에 기재 바라며, 입증자료 등이 있을 시 자료명 기재 바랍니다.

※관리번호	인권영향평가(공통)점검표
2017-26	
조례·규칙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부 서 점검표 작성	1. 해당업무 담당자는 주어진 인권영향점검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였는가?	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2. 해당업무 담당자는 해당업무의 인권영향평가표를 검수하기 위해 필요한 근거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였는가?	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권 리 침해	3. 해당업무 담당자는 정책운영과정에서 혹시 발생할 수 있는 권리침해내용에 대해 인지하고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였는가?	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4. 해당업무 담당자는 사용하는 용어에 인권침해적 요소가 있는지 여부를 엄밀히 점검하여, 인권 침해적 요소가 없도록 조치하였는가?	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주 민 참여	5. 해당업무 담당자는 정책관련정보가 주민에게 충분히 전달되도록 정보공개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였는가?	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6. 해당업무 담당자는 정책수립과정에 주민들의 참여가 충분히 보장되도록 적절한 조치를 수행하였는가?	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구 제 수 단	7. 해당업무 담당자는 해당정책으로 인해 주민들의 권리 침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적절한 조치를 수행하였는가?	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주 민 참여	8. 해당정책은 주민들의 인권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는가?	상당한 효과기대 <input type="checkbox"/> 약간의 효과기대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없음 <input type="checkbox"/>
	9. 해당정책 수행 시 주민들의 인권침해 가능성이 있는가?	인권침해요소가 있으므로주의필요 <input type="checkbox"/> 인권침해요소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인권영향평가(조례 및 규칙 제·개정용)점검표

(2017. 10. 10.)

조례 및 규칙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검 토 항 목	
<p>1. 해당조례 및 규칙의 제·개정으로 인하여, 원치 않는 피해를 보거나 인권 및 권리가 침해되는 주민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가?</p> <p><input checked="" type="checkbox"/> 인권침해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됨</p> <p><input type="checkbox"/> 인권침해 가능성이 일부 있으므로 세심한 관리가 요망된다고 판단됨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부분은 다음과 같음: (필요시 별지사용)</p>	
<p>2. 해당조례 및 규칙의 제·개정내용에 대해 인권담당부서에서 주민들의 인권침해 방지 및 인권향상을 위하여 별도로 요청할 내용이 있는가?</p> <p><input checked="" type="checkbox"/> 별도 요청사항 없음</p>	

⑧ 성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1. 제안이유

아동의 인권이 실현되고 아동이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제정된 「성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대해 아동친화도시 조성 원칙, 아동의 참여, 아동의 교육·여가·문화생활 및 놀권리, 아동권리교육 및 홍보, 아동인권실태조사, 아동 인권침해 구제 및 아동 권리보호관 등의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아동의 참여권 등 아동의 4대 기본권의 실질적 증진에 기여하고 입법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아동의 놀권리 보장을 위한 “놀권리” 정의(안 제2조 제3호 삽입)

나. 구민, 아동관련 시설의 장 및 보호자, 민간사업자 등에 대한 책무규정(안 제3조 제2항~제4항 삽입)

다. 아동친화도시 조성 원칙(안 제5조 제5항~제6항 삽입)

라. 아동의 참여, 아동의 교육·여가·문화생활 및 놀권리 규정(안 제9조~제10조 신설)

마. 아동권리교육 및 홍보, 아동인권실태조사, 아동 인권침해 구제 등(안 제11조~제13조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아동복지법

인권영향평가 기초자료 작성서식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 조례·규칙 제·개정용

※관리번호	인권영향평가 기초자료			
2017 - 27				
조례·규칙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관련규정 (고시, 훈령, 규정, 지침, 협약 등)				
입법일정 (예정)	관계부서 협 의	대상부서		
		협의기간		
	입법예고	2017. 9. 21.부터 2017. 10. 11.까지(20일간 예정) 매체 : 공보(구보), 기타(구 홈페이지)		
	조례·규칙 심 의 회	2017. 11월		
	의회상정			
첨부자료	필수자료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개정안		
	기타자료			
※ 검 토 결 과				

작 성 자	부서명	직 급	성 명	전화번호
	교육아동청소년담 당관	행정6급	오미숙	02-2241-2432

「※」 란은 기재하지 말 것

인권영향 점검표(1) 조례·규칙 제·개정용

※ 해당사항에 ○로 표시해 주십시오.

구 분	질 문	응 답		비 고
권리 침해	관련조항에 권리침해 요소가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	
	사용된 용어에 인권침해적 요소가 있습니까? (인권침해적 용어의 사용, 알기 쉬운 법률용어 사용 등 점검)	① 예		
		② 아니오	○	
주민 참여	제·개정의 과정에서 주민의 참여가 보장되어 있습니까?	① 예	○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제출
		② 아니오		
구제 수단	제·개정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권리침해 요소를 해소할 수 있는 수단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	
기대 효과	제·개정으로 주민들의 인권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습니까?	① 예	○	아동 놀권리 등 아동권리 항목 보완
		② 아니오		

작성요령

가. 제·개정되는 조례·규칙의 시행 전 고려사항, 시행효과 등을 판단하여 5개의 인권영향평가 세부 평가항목 응답란의 ‘예’ 또는 ‘아니오’에 “○”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5개의 인권영향평가 세부 평가항목에 ‘예’로 체크한 경우 해당내용을 비고란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그 외, 보완설명이 필요한 경우 비고란에 기재 바라며, 입증자료 등이 있을 시 자료명 기재 바랍니다.

※관리번호	인권영향평가(공통)점검표
2017-27	
조례·규칙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부 서 점검표 작성	1. 해당업무 담당자는 주어진 인권영향점검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였는가?	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2. 해당업무 담당자는 해당업무의 인권영향평가표를 검수하기 위해 필요한 근거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였는가?	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권 리 침해	3. 해당업무 담당자는 정책운영과정에서 혹시 발생할 수 있는 권리침해내용에 대해 인지하고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였는가?	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4. 해당업무 담당자는 사용하는 용어에 인권침해적 요소가 있는지 여부를 엄밀히 점검하여, 인권 침해적 요소가 없도록 조치하였는가?	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주 민 참여	5. 해당업무 담당자는 정책관련정보가 주민에게 충분히 전달되도록 정보공개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였는가?	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6. 해당업무 담당자는 정책수립과정에 주민들의 참여가 충분히 보장되도록 적절한 조치를 수행하였는가?	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구 제 수 단	7. 해당업무 담당자는 해당정책으로 인해 주민들의 권리 침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적절한 조치를 수행하였는가?	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주 민 참여	8. 해당정책은 주민들의 인권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는가?	상당한 효과기대 <input type="checkbox"/> 약간의 효과기대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없음 <input type="checkbox"/>
	9. 해당정책 수행 시 주민들의 인권침해 가능성이 있는가?	인권침해요소가 있으므로주의필요 <input type="checkbox"/> 인권침해요소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인권영향평가(조례 및 규칙 제·개정용)점검표

(2017. 10. 10.)

조례 및 규칙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검 토 항 목	
<p>1. 해당조례 및 규칙의 제·개정으로 인하여, 원치 않는 피해를 보거나 인권 및 권리가 침해되는 주민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가?</p> <p><input checked="" type="checkbox"/> 인권침해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됨</p> <p><input type="checkbox"/> 인권침해 가능성이 일부 있으므로 세심한 관리가 요망된다고 판단됨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부분은 다음과 같음: (필요시 별지사용)</p>	
<p>2. 해당조례 및 규칙의 제·개정내용에 대해 인권담당부서에서 주민들의 인권침해 방지 및 인권향상을 위하여 별도로 요청할 내용이 있는가?</p> <p><input checked="" type="checkbox"/> 별도 요청사항 없음</p>	

㉑ 성북구 미세먼지 없는 맑은 도시 만들기 조례

1. 제안이유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으로부터 구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을 보호하고, 미세먼지 관리 대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추진의 지속성을 확보하고 구민의 참여를 촉진하여 성북구를 미세먼지 없는 맑은 도시로 만드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 참여주체의 권리 및 의무(안 제3조 ~ 제5조)

다. 미세먼지 관리 방안(안 제7조 ~ 제15조)

-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의 수립 및 시행
- 미세먼지 예·경보제 및 비상저감조치의 시행, 취약계층의 보호 등

라. 구민의 참여 및 알 권리 보장(안 제16조 ~ 제18조)

- 구민 거버넌스의 구성 및 운영, 교육 및 홍보 등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대기환경보전법」,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인권영향평가 기초자료 작성서식 (환경과)

- 조례·규칙 제·개정용

※관리번호	인권영향평가 기초자료		
2017 - 28			
조례·규칙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미세먼지 없는 맑은 도시 만들기 조례		
관련규정 (고시, 훈령, 규정, 지침, 협약 등)			
입법일정 (예정)	관계부서 협 의	대상부서	
		협의기간	
	입법예고	2017. 9. 21.부터 2017. 10. 11.까지(20일간 예정) 매체 : 공보(구보), 기타(구 홈페이지)	
	조례·규칙 심 의 회	2017. 11월	
	의회상정	2017. 11월(제2차 정례회 시)	
첨부자료	필수자료	1. 조례 제정 관련 계획서 2. 성북구 미세먼지 없는 맑은 도시 만들기 조례 제정안	
	기타자료		
※ 검 토 결 과			

작 성 자	부서명	직 급	성 명	전화번호
	환경과	행정8급	이경민	2241-3033

「※」 란은 기재하지 말 것

인권영향 점검표(1) 조례·규칙 제·개정용

※ 해당사항에 ○로 표시해 주십시오.

구 분	질 문	응 답		비 고
권리 침해	관련조항에 권리침해 요소가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	
	사용된 용어에 권리침해적 요소가 있습니까? (인권침해적 용어의 사용, 알기 쉬운 법률용어 사용 등 점검)	① 예		
		② 아니오	○	
주민 참여	제·개정의 과정에서 주민의 참여가 보장되어 있습니까?	① 예	○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제출
		② 아니오		
구제 수단	제·개정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권리침해 요소를 해소할 수 있는 수단이 있습니까?	① 예		권리침해 요소없음
		② 아니오		
기대 효과	제·개정으로 주민들의 인권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습니까?	① 예	○	구민의 생활환경 보장
		② 아니오		

작성요령

가. 제·개정되는 조례·규칙의 시행 전 고려사항, 시행효과 등을 판단하여 5개의 인권영향평가 세부 평가항목 응답란의 ‘예’ 또는 ‘아니오’에 “○”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5개의 인권영향평가 세부 평가항목에 ‘예’로 체크한 경우 해당내용을 비고란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그 외, 보완설명이 필요한 경우 비고란에 기재 바라며, 입증자료 등이 있을 시 자료명 기재 바랍니다.

※관리번호	인권영향평가(공통)점검표
2017-28	
조례·규칙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미세먼지 없는 맑은 도시 만들기 조례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부 서 점검표 작성	1. 해당업무 담당자는 주어진 인권영향점검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였는가?	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2. 해당업무 담당자는 해당업무의 인권영향평가표를 검수하기 위해 필요한 근거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였는가?	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권 리 침해	3. 해당업무 담당자는 정책운영과정에서 혹시 발생할 수 있는 권리침해내용에 대해 인지하고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였는가?	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4. 해당업무 담당자는 사용하는 용어에 인권침해적 요소가 있는지 여부를 엄밀히 점검하여, 인권 침해적 요소가 없도록 조치하였는가?	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주 민 참여	5. 해당업무 담당자는 정책관련정보가 주민에게 충분히 전달되도록 정보공개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였는가?	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6. 해당업무 담당자는 정책수립과정에 주민들의 참여가 충분히 보장되도록 적절한 조치를 수행하였는가?	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구 제 수 단	7. 해당업무 담당자는 해당정책으로 인해 주민들의 권리 침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적절한 조치를 수행하였는가?	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주 민 참여	8. 해당정책은 주민들의 인권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는가?	상당한 효과기대 <input type="checkbox"/> 약간의 효과기대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없음 <input type="checkbox"/>
	9. 해당정책 수행 시 주민들의 인권침해 가능성이 있는가?	인권침해요소가 있으므로주의필요 <input type="checkbox"/> 인권침해요소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인권영향평가(조례 및 규칙 제·개정용)점검표

(2017. 10. 10.)

조례 및 규칙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미세먼지 없는 맑은 도시 만들기 조례
검 토 항 목	
<p>1. 해당조례 및 규칙의 제·개정으로 인하여, 원치 않는 피해를 보거나 인권 및 권리가 침해되는 주민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가?</p> <p><input checked="" type="checkbox"/> 인권침해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됨</p> <p><input type="checkbox"/> 인권침해 가능성이 일부 있으므로 세심한 관리가 요망된다고 판단됨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부분은 다음과 같음: (필요시 별지사용)</p>	
<p>2. 해당조례 및 규칙의 제·개정내용에 대해 인권담당부서에서 주민들의 인권침해 방지 및 인권향상을 위하여 별도로 요청할 내용이 있는가?</p> <p><input checked="" type="checkbox"/> 별도 요청사항 없음</p>	

10 성북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일부개정조례

1. 제안이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의 위촉·해촉 등에 관한 사항 및 상위법과 불일치하는 부분에 대하여 법제처의 권고사항에 따라 상위 법령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위원회 운영을 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설치근거(시행령) 추가(안 제1조)
- 나. 위원의 위촉 및 해촉 등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과 일치시킴 (안 제3조, 안 제5조, 안 제5조의2)
- 다. 의결에 관한 사항 중 불합리한 규정 해소 (안 제6조 제2항)
 - 가부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결정 ⇒ 부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인권영향평가 기초자료 작성서식 (담당부서)

- 조례·규칙 제·개정용

※관리번호	인권영향평가 기초자료		
2017 - 29			
조례·규칙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조례		
관련규정 (고시, 훈령, 규정, 지침, 협약 등)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입법일정 (예정)	관계부서 협 의	대상부서	감사담당관
		협의기간	
	입법예고	2017. 9. 21.부터 2017.10.11.까지(20일간) 매체 : 공보(구보), 기타(홈페이지)	
	조례·규칙 심 의 회	2017년 11월(예정)	
	의회상정	2017년 11월(예정)	
첨부자료	필수자료	서울특별시 성북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기타자료		
※ 검 토 결 과			

작 성 자	부서명	직 급	성 명	전화번호
	지적과	7급	김하림	2241-4645

「※」 란은 기재하지 말 것

인권영향 점검표(1) 조례·규칙 제·개정용

※ 해당사항에 ○로 표시해 주십시오.

구 분	질 문	응 답		비 고
권리 침해	관련조항에 권리침해 요소가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	
	사용된 용어에 인권침해적 요소가 있습니까? (인권침해적 용어의 사용, 알기 쉬운 법률용어 사용 등 점검)	① 예		
		② 아니오	○	
주민 참여	제개정의 과정에서 주민의 참여가 보장되어 있습니까?	① 예	○	입법예고 의견청취
		② 아니오		
구제 수단	제·개정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권리침해 요소를 해소할 수 있는 수단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	
기대 효과	제·개정으로 주민들의 인권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	

작성요령

가. 제·개정되는 조례·규칙의 시행 전 고려사항, 시행효과 등을 판단하여 5개의 인권영향평가 세부 평가항목 응답란의 ‘예’ 또는 ‘아니오’에 “○”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5개의 인권영향평가 세부 평가항목에 ‘예’로 체크한 경우 해당내용을 비고란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그 외, 보완설명이 필요한 경우 비고란에 기재 바라며, 입증자료 등이 있을 시 자료명 기재 바랍니다.

※관리번호	인권영향평가(공통)점검표
2017-29	
조례·규칙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조례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부 서 점검표 작성	1. 해당업무 담당자는 주어진 인권영향점검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였는가?	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2. 해당업무 담당자는 해당업무의 인권영향평가표를 검수하기 위해 필요한 근거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였는가?	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권 리 침해	3. 해당업무 담당자는 정책운영과정에서 혹시 발생할 수 있는 권리침해내용에 대해 인지하고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였는가?	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4. 해당업무 담당자는 사용하는 용어에 인권침해적 요소가 있는지 여부를 엄밀히 점검하여, 인권 침해적 요소가 없도록 조치하였는가?	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주 민 참여	5. 해당업무 담당자는 정책관련정보가 주민에게 충분히 전달되도록 정보공개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였는가?	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6. 해당업무 담당자는 정책수립과정에 주민들의 참여가 충분히 보장되도록 적절한 조치를 수행하였는가?	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구 제 수 단	7. 해당업무 담당자는 해당정책으로 인해 주민들의 권리 침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적절한 조치를 수행하였는가?	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주 민 참여	8. 해당정책은 주민들의 인권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는가?	상당한 효과기대 <input type="checkbox"/> 약간의 효과기대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없음 <input type="checkbox"/>
	9. 해당정책 수행 시 주민들의 인권침해 가능성이 있는가?	인권침해요소가 있으므로주의필요 <input type="checkbox"/> 인권침해요소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인권영향평가(조례 및 규칙 제·개정용)점검표

(2017. 10. 10.)

조례 및 규칙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조례
검 토 항 목	
<p>1. 해당조례 및 규칙의 제·개정으로 인하여, 원치 않는 피해를 보거나 인권 및 권리가 침해되는 주민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가?</p> <p><input checked="" type="checkbox"/> 인권침해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됨</p> <p><input type="checkbox"/> 인권침해 가능성이 일부 있으므로 세심한 관리가 요망된다고 판단됨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부분은 다음과 같음: (필요시 별지사용)</p>	
<p>2. 해당조례 및 규칙의 제·개정내용에 대해 인권담당부서에서 주민들의 인권침해 방지 및 인권향상을 위하여 별도로 요청할 내용이 있는가?</p> <p><input checked="" type="checkbox"/> 별도 요청사항 없음</p>	

보고사항 3

공공건축물(50플러스센터) 인권영향평가 회의 개최 결과

■ 일 시 : 2017. 10. 23.(월) 15:30 ~ 17:00

■ 장 소 : 자원봉사센터(구청 7층)

■ 참석자 : 9명

- 공공건축물 인권영향평가단 : 이성석, 이윤하, 인권센터장
- 성북구 : 건축과 공공건축팀장, 건축과 담당 주무관, 어르신복지과 50+정책팀장, 어르신복지과 담당 주무관, 인권센터 담당 주무관
- 시공 건축사사무소((주)코비 건축사사무소) : 건축가 김승희

■ 안 건: 『50플러스센터』 설계안 인권영향평가 시행

■ 인권영향평가 의견

	항 목	설계안	평가 의견	비 고
인권 관련	장애인 화장실	3, 4층 각각 여남 장애인 화장실	♦ 장애/비장애 구분 없는 통합 화장실 을 3, 4층 남녀 화장실에 각각 설치	분리 설치 시 차별적 인식 우려
	시설관리직원 휴게 공간	없음	♦ 계단실 아래, 3층 실외기 위치, 옥상 등 공간 재배치 통해 설치	시설 권리 등 노동환경 보장
	복도	1800mm 확보	♦ 복도폭 넓히고(30cm 증폭), 포켓 복 도마당 배치로 폐쇄성 극복, 활기 있는 공간	이용자의 커뮤니케이션 역량 강화
	가변형 공간	고려되어 있지 않음	♦ 선 건축, 후 운영자가 결정되는 공 공건축 특성을 고려하여 공간 가변 성 적용	주민 의견 수렴
	사용자 의견 반영	타 센터 벤치마킹	♦ 전문가(센터 운영자, 당사자 권익단 체)와 유경험자의 의견 반영 요청	주민 역량 강화
기타 편의 성 및 건축 경제성	1층 자전거 거치대 설치 및 공기주입시설 설치			
	강의실에 가방 외투 사물함 등 수납 공간 확보			
	물탱크 여유 공간 활용 창고(제설장비, 수리용 가구 등)			

- 2017년 9월 -
성북구 인권위원회 간담회 개최결과

1. 회의개요

- 일 시 : 2017. 9. 13.(수) 16:00~18:20
- 장 소 : 성북배움터(구청 3층)
- 참석자 : 10명(박다혜,손민호,엄혜진,유의선,윤정섭,이민영,이진수,
이철,전문수,하장호)

2. 회의결과

■ 조례 · 제개정 인권영향평가 검토

- 성북구 행정서비스헌장제정 및 운영규칙 : 원안동의
- 성북구 마을자치회 설치 · 운영에 관한 조례 : 권고결정(제39호)
- 성북선잠박물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권고결정(40호)

■ 의결사항

- 인권위원회 소위원회 운영

■ 심의사항

- 성북구 공중화장실 전수조사 결과 : 추후 추가논의

■ 주요 업무 추진 사항 보고

-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 인권영향평가 결과
- 7월 인권위원회 간담회 결과
- 제2기 인권센터 시민위원 선정 결과
- 성북구 노인인권 실태조사 연구용역
- 인권센터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채용
- 안암동 주민센터 인권전시관 인권놀이터 체험교육 운영

2017년 하반기 복지시설 종사자 및 사회적 경제 주체를 위한 인 권 교 육 추 진 계 획

1 추진 근거

■ 서울특별시 성북구 인권증진 기본조례 제10조(인권교육 실시)

-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연 2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성북구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직원
2. 국가나 성북구의 출연과 재정보조를 받는 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람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평가지표 중 직원교육, 이용자의 권리(인권보장노력)등이 평가항목에 포함

2 교육 목표

■ 복지시설 종사자 및 사회적 경제 주체, 출자 출연기관 종사자 등 지역 사회 구성원의 인권의식 제고 및 인권 감수성 향상을 통한 인권문화 확산

■ 업무현장에서 인권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 인권적 관점으로 재해석 및 해결함으로써 인권옹호자로서의 책임과 보호능력을 찾고,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기여

3 운영 개요

■ 일 시 : 2017. 11. 24(금) 14:00 ~ 18:00(4시간)

■ 장 소 : 평생학습관 소강의실

■ 인 원 : 40여명

■ 대 상 :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 교육내용

구분	시간	강 사	내 용	강 사 프 로 필
1강	14:00~ 16:00	이진희	-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 돌봄종사자들에게 취약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 서울대학교 여성연구소 객원연구원 - 감리교신학대학교 외래교수 - 양성평등 교육강사
2강	16:00~ 18:00	이은희	- 인권을 말하는 101개 이야기 : 구립시설, 노인복지시설 인권침해 사례 등으로 살펴보는 인권의 현주소, 종사자들의 고충	- (재)한국여성재단 사무국장 - 現 은평구 인권센터장

■ 교육신청

- 신청기간 : 2017. 11. 7(화) ~ 11. 21(화)까지
- 신청방법 : 전화, 방문 및 이메일 신청(구 홈페이지) 제출
- 접 수 처 : 성북구청 인권센터(전화 02-2241-2192, 이메일 fewgirl@sb.go.kr)
- 대상자 통보 : 2017. 11. 22(수) 개별통보

■ 수 료 증 : 교육 수료 후 발급

인권도시지방정부협의회 설립 준비 보고

1 추진배경 및 방향

■ 추진배경

- 인권정책 및 관련제도 마련을 통한 지방정부의 역할 증대
*2017. 4월 기준, 전국 98개 지방정부(광역 16, 기초 82) 인권조례 제정
- UN인권이사회 ‘지방정부와 인권’ 결의안 채택 (2013. 9.)
- 유럽인권도시회의(바르셀로나 중심 21개국 235개 도시), 미국인권도시 네트워크(피츠버그·워싱턴DC 중심) 등 인권거버넌스 활동 증대
- 2015 세계인권도시포럼 포럼추진(자문)위원회의 인권도시지방정부협의회 구성 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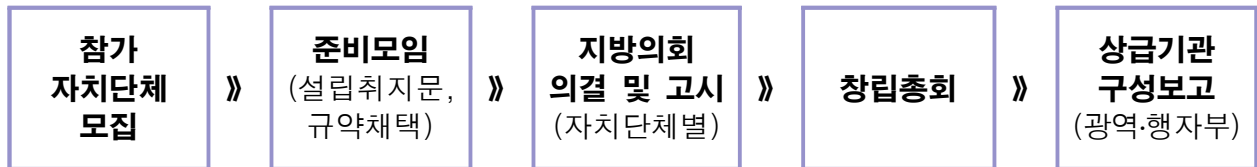
■ 추진방향

- 지방정부 인권업무의 기반 구축 및 역량 강화
- 인권도시 제도화를 위한 공동원칙 및 지침 수립
- 각 지방정부 특성에 따른 인권정책 발굴 및 공론화
- 공동 인권사업 수행을 통한 인권도시 구축
- 행정기관-인권위원회-시민사회 협력을 통한 인권거버넌스 구축
- 인권도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국제교류·협력 추진

2 설립내용 및 추진경과

■ 설립내용

- 대 상 : 설립취지 동의한 기초지방자치단체(지방정부)
 - 향후 광역·기초를 아우르는 연대방안 모색
- ※ 광역자치단체 인권도시협의회 발족 : '16. 2. 26.
- 참여단체 : 26개 지방정부 ('17. 10. 31.현재)
- 조직형태 :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른 행정협의회
- 설립절차



■ 재 정

- 부담금 : 1백만원/년 ※ 사업진행에 따라 예산초과분 발생 시 협의하여 공동부담
- 용 도 : 실무자 인권워크숍, 인권행정 가이드라인 개발, 인권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세계인권도시포럼 세션기획 등

■ 추진현황

- 설립제안서 발송 (2016. 6. 3.)
- 1·2·3차 실무회의 (2016. 7. 22. ~ 2016. 11. 18.)
- 조기 대통령 선거실시에 따른 창립총회 연기 (2017. 3. → 2017. 12.)
- 4차 실무회의 (2017. 9. 14.)

■ 향후계획

- 각 지방정부별 운영 규약안 의결·고시 추진 (2017. 10. ~)
- 준비위원회 참여단체 실무자 회의 및 5차 실무회의 (2017. 11.)
- 창립총회 (2017. 12. 7.) ※ 수원 한국인권회의 연계

보고사항 7

- 안암동 주민센터 인권전시관 - ‘같이 숨쉬는 나비 프로젝트’ 결과 보고

- 전시주제 : 나비 프로젝트 “같이 숨쉬는 나비 호흡” (최선 작가 작품)
 - 장애와 비장애에 대한 차별적 인식 변화를 위한 체험형 프로그램

- 참여자 : 20명
 - 다솔 지역아동센터 초등생 11명, 유아 2명
 - 인권교육강사 5명, 다솔지역아동센터 교사 2명
 - 작가 1명(최선)

- 운영 프로그램

- 체험형 프로그램 : 나비 프로젝트
- 워크숍 : 참여 아동, 인권교육 강사 등
- 전 시 : 체험형 프로그램, 워크숍 과정 결과물 등 산출품
 - 최선 작가의 ‘나비 프로젝트’ 를 중심으로 구성
 - ‘나비 프로젝트’ 종료 후 아동들의 체험을 기록한 영상 상영
 - 완성된 ‘나비 그림’ 은 전시장 내 벽면에 설치·전시

- 진행사진



❖ 제46차 인권위원회 정례회의 일정

- 일 시 : 2017. 12. 13 (수) 16:00
- 장 소 : 자원봉사센터(성북구청 7층)